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10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김소희·박덕흠·김정재

이달희 • 조정훈 • 김상훈

김대식 · 김위상 · 김성원

조경태 • 우재준 • 박성훈

이성권 • 고동진 • 강대식

김예지 • 김선교 • 최형두

조지연 • 유용원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임(안 별표1).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피보험기간란 중 "10년 이상"을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하고, 같은 표 피보험기간란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종전의 10년 이상)란 다음에 15년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년 이상 270일 300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피보험기간					
구분		1년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이상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

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